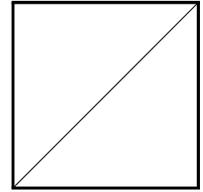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1. 2. 8. (임시 제2차)	

코로나19下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후속조치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2. 8.

## 1. 보고주문

「코로나19下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후속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2. 보고이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코로나19下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이 외부감사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되고 있음.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가정 및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향후 회계감리 과정에서도 감독지침을 적극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4. 참고사항

가. 코로나19下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 <붙임>

# 코로나19下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후속조치 보고

## 1. 검토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과 함께 코로나19下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21.1.11.)

### < 감독지침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였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회계오류**라 판단하지 않음
  - 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가 아님
  - ② **할인을 추정**시 **비합리적 시장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범위 제시**

□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 하였으나, 외부감사 현장에서 지침 적용 관련 일부 애로\*가 제기되고 있음

\* 상장협, 코스닥협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

### 현장의 목소리

- ① **(감사인의 보수적 접근)**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하여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 \* 예) 외부수치자료(국제산업협회 수치자료) 인용 등
- ② **(과거 관행의 적용)**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 수행
- ③ **(추정근거 제시 어려움)**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나,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 존재
  - \* 예) 코로나19 이후 매출 등의 회복가능성 및 회복시기 추정

⇒ 이에, 금융위원회등은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침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보고드립니다

## 2. 후속조치안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
  -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함

<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16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보론2 (문단 16(a) 참조, 회계추정치)

-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데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여부

- ②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서도 적극 고려할 것을 명확히함
  - 코로나19의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대상이 아님

\*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대한 예시는 붙임 참조

## 3. 향후계획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후속조치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에게 지침의 현장적용을 당부\*

\*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명의 서신 발송

##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과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 제1036호(자산손상)).

-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text{Max}[\text{순공정가치}^{\text{①}}, \text{사용가치}^{\text{②}}]$ 인데, 주로 기업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②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그 중에서도 통상  $\text{순공정가치} < \text{사용가치}$ 인 경우\*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 종속(관계)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 특히, '20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참고) 현장의 목소리**

- 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 ②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 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③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이에,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 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TF)'을 구성('20.10월, 회계기준원, 상장협, 한공회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월~11월)를 통해 지침을 마련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산손상 기준서).

□ 또한,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9).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 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 자산의 사용가치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되, 코로나19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기술\* 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가치 측정방법 >

$$\text{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frac{\text{미래현금흐름}^{\text{①}}}{(1+\text{할인율}^{\text{②}})^n}$$

- 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

-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 ②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합니다.

< [참고] 할인율 추정시,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 ③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 4 감독지침의 성격

- 동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5 기대효과

- ①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 ②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 ③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 6 향후 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